

의안 번호	540
----------	-----

(가)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(가)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1. 21

전문위원 김동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540호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1. 12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1. 14.

2. 제안이유

- 지역 청년 창업 거점시설로서 26. 1월 준공 예정인 「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」 내 '(가)뷰티창업센터' 운영에 있어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, 풍부한 청년 인프라를 보유하고 그에 따른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

례」 제8조(운영의 위탁) 및 제3항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- 시설명 : (가)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
- 위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45-1~3, 5층
- 위탁기간 : 2026. 3. ~ 2028. 12.(2년10개월)
- 주요시설 : 헤어·메이크업·네일 등 실습·교육공간 / 소기업 입주실 / 사무실 등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
- 위탁내용
 - 뷰티 산업 (예비)초기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뷰티 산업 (예비)초기 1인 창업자 대상 보육 지원
 - 관내 청년 대상 뷰티 관련 강좌 개발 및 운영
 - 센터 및 프로그램 등 홍보사업 및 시설관리·운영
 - 그 밖에 청년 뷰티창업 관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위탁비용 : 100,000천원 (26년도 기준 / 10개월 운영 예정)
- 수탁 참가 자격
 - 뷰티 창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'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'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,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
 -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관련 연구기관,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

-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련 연구기관,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
- 정치적, 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·법인은 제외

나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청년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 중인 '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' 내 위치한 뷰티 관련 창업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뷰티 산업 관련 전문적인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한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
- 관내 뷰티 관련 인프라 연계를 토대로 뷰티 관련 아카데미 과정부터 창업 기업의 보육 및 지원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창업환경 지원으로 지역 내 실질적인 창업기업 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 제15조(시설 설치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(가칭)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(이하 ‘창업센터’)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민간위탁 조례’)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‘창업센터’는 「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」 내에 설치되어 2026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운영사무를 청년 인프라와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체결일로부터 2년 10개월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.
- 민간위탁하려는 ‘창업센터’에 관한 사무와 위탁내용은 다음과 같음.
 1. 뷰티 산업 (예비)초기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2. 뷰티 산업 (예비)초기 1인 창업자 대상 보육 지원
 3. 관내 청년 대상 뷰티 관련 강좌 개발 및 운영
 4. 센터 및 프로그램 등 홍보사업 및 시설관리·운영
 5. 그 밖에 청년 뷰티창업 관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(가칭)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현황

- 위치 및 규모 :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 5층(길음동 1245-1 외)

구분	용 도	면적(m ²)	입주시설
옥상	옥상정원(공유마당)	-	
5층	뷰티 창업센터, 소기업 입주실(1실/8석)	242.87	
4층	소기업 입주실(3실/24석), 소회의실(2실), 멘토링룸	242.87	1인 창조기업

3층	1인 창조기업 입주석(32석)	242.87	지원센터
2층	대회의실(교육장), 소기업 입주실(1실/8석), 자유석(8석), 소회의실(2실)	242.87	
1층	사무실(8석), 전시·휴게·공유·교육공간, 카페테리아 등	222.81	길이음
지하층	주차장(7면/경차전용 1면 포함), 기계실, 창고(3실)	298.61	
계		1,492.9	

- 주요사업 : 뷰티 창업 관련 교육 및 보육지원 / 컨텐츠 스튜디오 등 제공
- 주요시설 : 헤어·메이크업·네일 등 실습·교육공간 / 소기업 입주실 / 사무실 등
- 운영시간 : 월~금, 09:00~18:00
- 운영인력 : 2명(센터장 1, 직원 1명)
- 위탁예산 : 100,000천원
- 위탁기간 : 2년 10개월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적격심사 후 수탁기관 선정

□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 제15조제3항¹⁾은 각각 지원센터 및 청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‘창업센터’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.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, 산학 협력단, 그 밖에 비영리 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
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 제15조(시설 설치 및 운영)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또한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2)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‘창업센터 운영’은 뷰티 창업 및 청년정책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□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

- ‘위탁기간’은 2년 10개월로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 제16조 제1항³⁾에서 정한 3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므로, 기간 설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 또한 ‘선정방법’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7조제1항 및 제2항⁴⁾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선정 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,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제16조(위탁기관 등) ① 청년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

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7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5.3.13.)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

- 다만, ‘창업센터’의 특성상 뷰티산업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,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역량의 면밀한 검토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